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
의 결 년 원 일	95. 8. 12 (제40회)

제출년월일 : 1995. 8. 4

제 출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주 문

- 특별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와 상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고, 설치시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안제7조)
- 직제개편(94. 5. 26 규칙 제902호)으로 보건사회국 사회과 노정계가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 노정계로 조정됨에 따라 노동복지회관의 소관상임위원회를 재무경제위원회로 조정(안제3조2항)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03호)이 1995년 7월 1일 개정공포됨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차량등록사업소”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을 삽입하고, 동항 제3호중 “노동복지회관”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의회는”는 다음에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를 삽입한다.

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생략) ②(생략) 1.(생략) 2. 재무경제위원회 재무국, 지역경제국, 사업소중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보건사회위원회 보건사회국, 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u>노동복지회관 소관에 관한 사항</u> 4. ~ 5.(생략)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생략) ③(생략)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신설)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u>노동복지회관</u> 3. 보건사회위원회 보건사회국, 사업소중 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소각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 5.(현행과 같음) 제7조(특별위원회) ①..... <u>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u>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